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대상·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영 1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윤리소양
2. 요양보호기초지식
3. 기본요양보호기술
4. 특수요양보호기술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의4와 같다.

제25조의2(설치기준 등)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5(수급자 및 수급자의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7(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를 사후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열람일 이후 24시간 이내 공문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수

급자 및 시설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4, 1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 별표 1의5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 별표 1의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수교육 실시기준(제11조의3제6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1) 교육대상

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년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다가 근무하려는 사람

2) 면제대상

해당 연도에 요양보호사의 신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방법

가. 직무교육 :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나. 그밖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지원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4. 이수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제25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복도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다.
-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공동거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바.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2. 관리기준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종사자(관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기관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3(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영 11조의2제2항에 따라</u> <u>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u> <u>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장</u> <u>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지식과 능</u> <u>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교육</u> <u>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u> <u>고 있거나 근무하려는 요양보호</u> <u>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u> <u>상 이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u> <u>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u> <u>야 한다.</u> <u>1. 직업윤리소양</u> <u>2. 요양보호기초지식</u> <u>3. 기본요양보호기술</u> <u>4. 특수요양보호기술</u> <u>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u> <u>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u> <u>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 <u>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u>

<신 설>

<신 설>

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의4와 같다.

제25조의2(설치기준 등)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신 설>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

<신 설>

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5(수급자 및 수급자의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
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와 시간을 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과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
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
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

<신 설>

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신 설>

· 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7(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에 소

<신 설>

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를 사후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열람일 이후 24시간 이내 공문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신 설>

<신 설>

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수급자 및 시설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u> <u>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u> <u>사·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u> <u>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u> <u>다.</u>
--	--